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28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 : 권명호・강기윤・구자근

김도읍 • 송언석 • 엄태영

유상범 • 이만희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·문화산업 등 분야별로 문화도 시를 지정할 수 있음.

다만, 문화도시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러나,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

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16 조제2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문화도시의 지정 취소) ①	제16조(문화도시의 지정 취소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
	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
	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